오산시의회 공고 제2023-27호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5월 30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

(정미섭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,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.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,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오산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 장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지급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마. 지원대상자의 소득·재산조사 및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- 바. 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,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 및 제10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3년 6월 5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 : 031)8036-8031, · 팩 스 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오산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,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, 오산시 문화예술 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예술인"이란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예술인 기회소득"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오산시 예술인에 대하여 오산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 - 3. "일정소득 수준"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 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

- 제5조(지급대상)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,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.
- 제6조(지급신청)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「예술인 복지법」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 한 내 예술 활동 증명서
 - 2.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동의서
 - 3.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 - ②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 야 한다.
- 제7조(소득 및 재산조사)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- 제8조(지급방법 및 지급시기)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 금액,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- 제9조(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)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

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제10조(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)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 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 - 1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
 - 2. 지급대상자의 사망,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,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
 - 3.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
 - 4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
 -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,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]

관계법령 발췌서

[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]

제5조(사업)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
- 2.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- 3.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- 4. 예술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
- 5.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
- 6.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「경기도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【예술인 복지법】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,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문화예술"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.
- 2. "예술인"이란 예술 활동을 업(業)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,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문화예술용역"이란 문화예술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.
- 4. "문화예술기획업자등"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·제작·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.

[예술인 복지법 시행령]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예술인 복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예술 활동의 증명) ① 「예술인 복지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4. 12. 3., 2016. 5. 3.>
 - 1. 「저작권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
 - 2.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
 - 3. 삭제 <2014. 3. 28.>
 - 4. 삭제 <2014. 3. 28.>
 - 5. 삭제 <2014. 3. 28.>
 - 6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
 -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,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· 운영,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